

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의 면허기준 (제10조제1항 관련)

1. 최저 면허기준 대수

법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수립한 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에서 정한 전용차량의 대수 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간선급행버스체계 실시계획에서 정한 전용차량의 대수

비고

1. 전용차량은 자기소유일 것. 다만, 타인이 소유한 전용차량을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용차량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전용차량도 자기 소유로 본다.
2.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자는 전용차량 중 상용차(常用車)의 고장·검사·점검 등이나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대체운행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거나 일시적인 수송수요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용자동차 대수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예비차량을 확보할 수 있다.
3. 운송사업면허권자는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의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위 표의 차량의 대수를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대수를 늘리거나 줄여서 적용할 수 있다.

2. 차고지 면적기준

대 당 면 적 (최 저)
36㎡ ~ 40㎡

비고

1. 차고는 자기 소유일 것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자기 소유로 본다.
 - 가. 운송사업자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주차장소를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, 주차장의 일부를 2년 이상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
 - 나. 운송사업자가 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리·운영하는 토지의 사용허가 등을 받아 해당 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
 - 다. 타인이 소유한 토지(차고를 포함한다)를 2년 이상 임대하여 차고로 사용하는 경우
2. 차고부대시설의 면적은 차고 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. 다만, 자동차정비업을 겸영(兼營)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비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비업에 사용되는 차고시설을 위 표의 차고 면적에 포함시킬 수 있다.
3. 차고지 면적기준은 면허를 받은 전용차량 외에 예비차량에도 적용한다.
4. 차고지 면적기준은 차고의 위치, 보유한 전용차량의 종류, 전용차량의 원활한

출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 표에 따른 1대당 면적기준의 범위에서 운송사업 면허권자가 정한다.

5. 신교통형 전용차량(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)의 경우 1대당 면적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용차량의 종류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.

3. 부대시설

구 분	시 설 기 준
가. 사무실 및 영업소	1) 수입금 및 배차의 관리 등 간선급행 버스체계 운송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추는 것 2) 운행계통의 기점·종점 및 운행경로 등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의 경영상 필요한 장소에 설치할 것
나. 정류소	정류소는 여객의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되, 매표시설 및 표지 등을 설치할 것
다. 차고설비 및 차고 부대시설	1) 차고는 포장(鋪裝)을 할 것 2) 차고에는 일상의 점검·정비 및 세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. 다만, 차고부지 외의 지역에 점검·정비 시설 또는 세차시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차량의 안전·배차, 그 밖에 운송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기준에 맞는 것으로 본다.
라. 휴게실 및 대기실	운수종사자가 대기하거나 휴식하기 위해 필요한 규모의 설비를 갖추는 것
마. 교육훈련시설	운수종사자에게 안전운행 및 서비스 향상 등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갖추는 것

비고: 운수종사자가 5명 이하인 경우에는 가목 중 사무실과 다목의 차고설비 및 차고 부대시설의 시설기준만 적용한다.